



## 식료품 공급업체 및 고객관련 정보 관련 영업비밀 부정취득과 부정사용에 관한 사건

31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6년(와) 제24950호
판결 일자	2005. 6. 27.	판결 결과	원고 전부승소
원고	미나리 서비스 유한회사		
피고	유한회사 시찌토쿠통상, Y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영업 비밀	야채의 수입판매에 관한 공급업체관련정보 및 고객관련정보		
키워드 (Keyword)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경업금지의무위반, 비밀유지의무위반		

### 02 사건 개요

원고는 식당업 및 식료품의 수입, 수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중화요리에 사용되는 신선야채의 생산, 수입, 판매 및 도매를 하고 있다.

피고 Y는 원고에서 재직 중인 시점인 2002. 7. 22. 피고 유한회사 시찌토쿠통상을 설립하여 중국야채의 수입, 판매 및 도매를 하였다.

### 03 주요 쟁점

원 고	⇔	⇐	피 고
피고Y가 절취한 중국 야채의 공급업체관련 정보 및 고객관련정보는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정보로서 가치도 없으며,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다.
피고들은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원고의 주요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독자적으로 중국 야채의 수입 및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바 없다.
피고Y는 원고에서 재직 중에 원고와 경업관계인 피고 시찌토쿠통상을 설립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Y는 취업규칙이나 비밀유지의무가 기재된 서약서를 본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가 없다.

### 04 판결 요지

피고Y가 절취한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Y는 2002년 원고의 공급업체 및 고객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복사하는 형태로 이를 절취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4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의 부정취득)에 해당한다.

피고Y가 피고 시찌토쿠통상을 설립한 후,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5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 05 Key Point

본 판례에서 적시된 부정경쟁행위의 양태는 다음과 같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4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인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5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인 영업비밀의 부정사용.